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검 토 보 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요구〉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058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수사요구안의 취지 및 특별검사의 제도 유형	4
2.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	7
가. 수사대상	7
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 및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8
다. 조직 규모	10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외 23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1.
3. 회부연월일 : 2025. 2. 12.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 됐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

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3. 제1호 사건에 대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5.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 수사전담팀이 마약 수사를 마무리하던 중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사

외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태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사요구안의 취지 및 특별검사 제도 유형

- 동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수사 외압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조속히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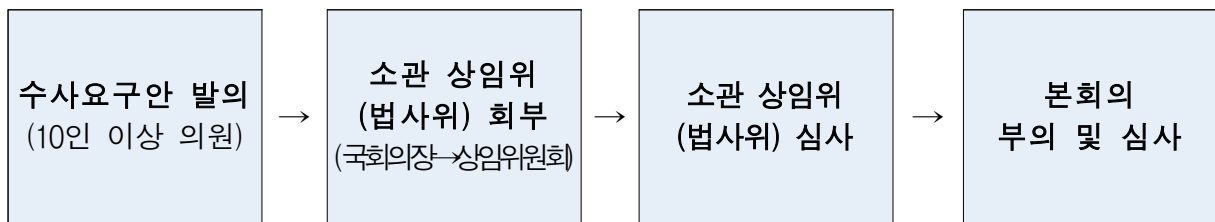
-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¹⁾ 수사요구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됨.

- 수사요구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며,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동 수사요구안에서 정한 범위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확정되고,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특별검사 이하 조직의 규모, 수사기간, 재판기간 등이 적용됨.²⁾

[표 1] 수사요구안의 심사 절차



-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그 수사대상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 수사요구안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p. 9.) 참조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³⁾

- 한편, 현재 동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과 관련된 개별 특검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되지 않았는데, 특별검사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196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

가. 수사대상

- 수사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유통 및 밀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 등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추가 수사 무마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그리고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함.

[표 2]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①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
② ①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③ ①에 대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④ ①-③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⑤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 및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 상설특검법에서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상 당연직 3인), 제1교섭단체⁴⁾에서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상 위촉직 4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특검후보추천위’⁵⁾)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인정되는 변호사 중 2인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함.

참고로,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특별검사 후보추천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95)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2024. 11. 28.)됨.⁶⁾

4)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로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를 의미함.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 2. 법원행정처 차장 /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6)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8.>

1.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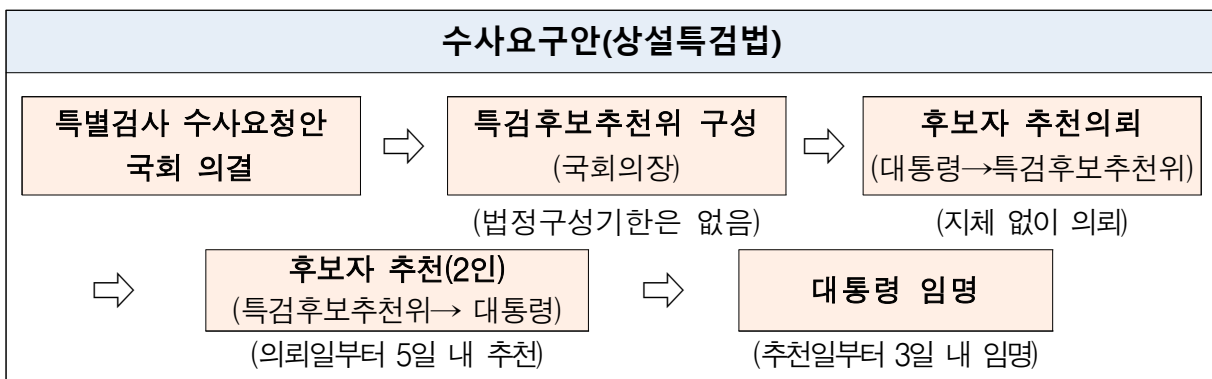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3]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시 후보자 추천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 (추천권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변호사 중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는 7인의 위원(당연직 3인, 위촉직 4인)으로 구성 - (당연직)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 (위촉직) 제1교섭단체 2인, 그 외 교섭단체 2인 ※ (2024. 11. 28. 본회의 의결사항)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 →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①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②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③ 특검후보추천위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④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

[표 4]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



다.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직 규모

-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인 인정되는 변호사 중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5인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표 5] 수사요구안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직규모

구 분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특별검사보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2인 (후보자는 4인까지 추천 가능)
특별수사관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파견 인력지원	① 5인 이내 파견검사 ② 30인 이내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수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그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표 6]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구 분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수사기간	① 준비기간: 20일(수사금지 명시)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1회)
재판기간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문 의 처

02) 6788-5060